

제1호 (2020년 3월호)



청렴가득, 행복가득



부패 내재 가능성있는 정보 공개

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범제화

- 「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」 제정 (2019.12.31.)
- 2020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

도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업무추진비 공개

「계약정보공개시스템」 운영

공사, 용역, 물품, 연차별 계획 등
계약 모든 내용 공개

도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예산·재정·계약정보 공개

도지사에게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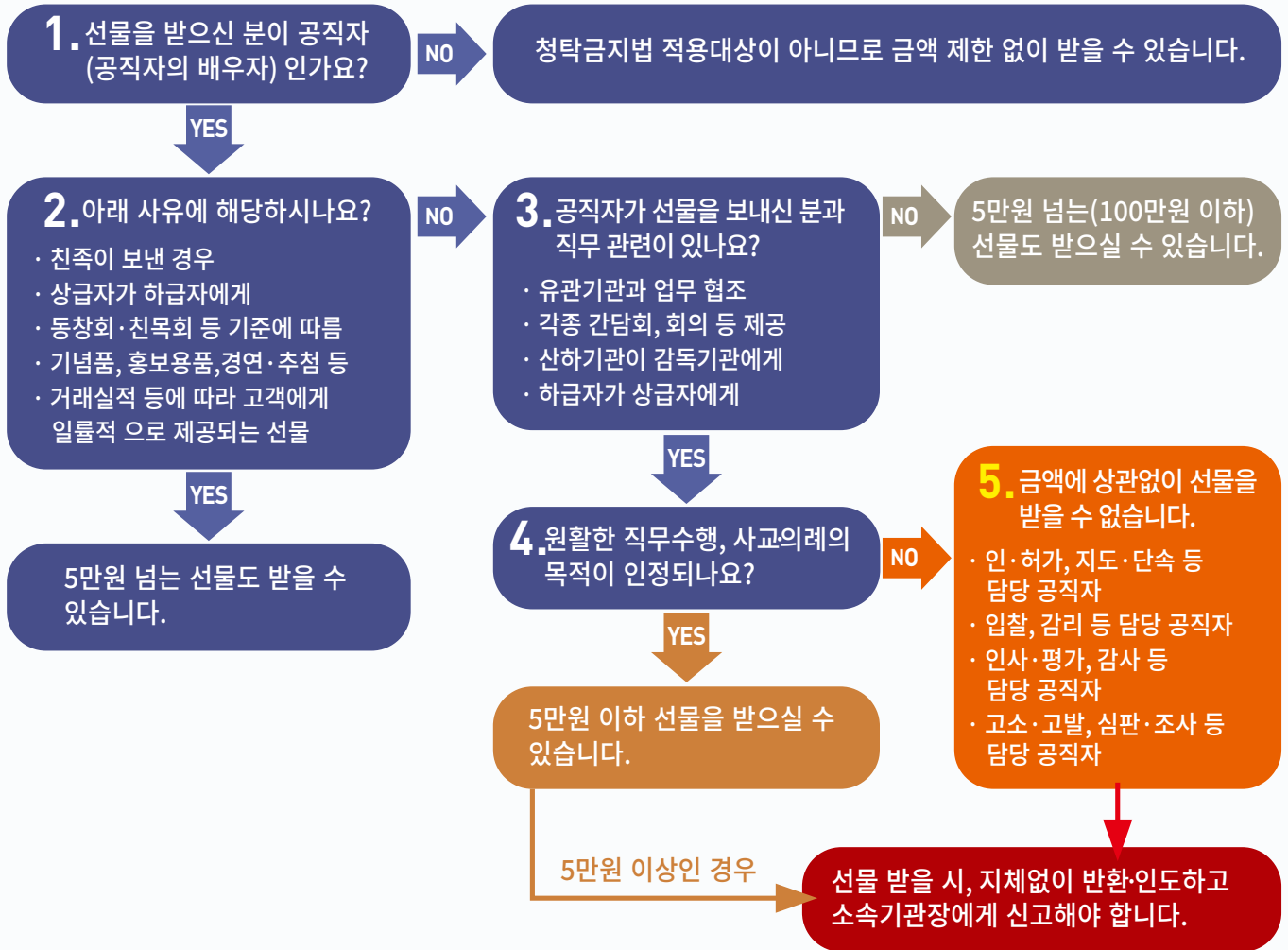
공사·용역·보조금 및 각종 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가
금품·향응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그 외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,
공직자 신고센터(064-710-3650) 또는 도 홈페이지 '원지사 핫라인'
(www.jeju.go.kr)으로 언제든지 신고 바랍니다.

② 일상 속 청렴법령



공직자는 **선물**을 **받**아도 되나요?
YES or NO?

START



Q. 알쏭달쏭 청렴퀴즈

A+B+C의 합은?

- 공직자는 직무와 무관한 자에게 1회 최대 **A만원**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.
- 「청렴가득, 행복가득」 2020년 3월호는 **제B호** 소식지이다.
- 「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2020년 **C월** 부터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※ 청렴퀴즈 정답을 3월31일까지 이메일(bds0321@korea.kr)로 성함, 연락처, 주소와 함께 보내주세요. 1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.